

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연명의료결정제도

존엄한 삶의 마무리
연명의료계획서



■ 연명의료계획서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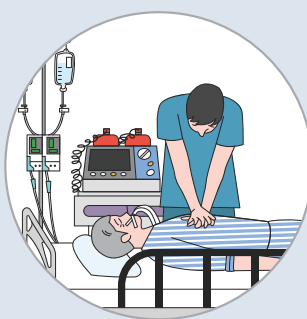
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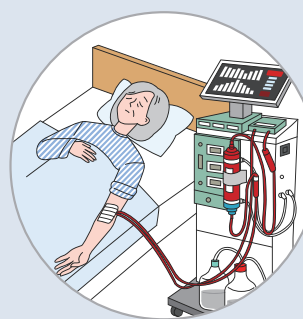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2018. 2. 4.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시행)

■ 연명의료중단 항목

심폐소생술



혈액 투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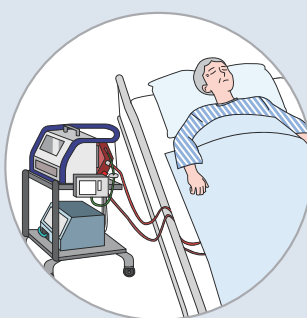
항암제 투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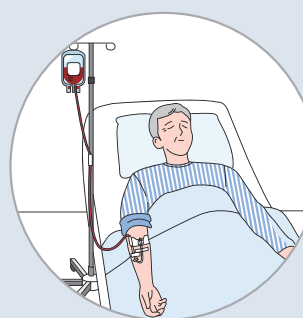
인공호흡기 착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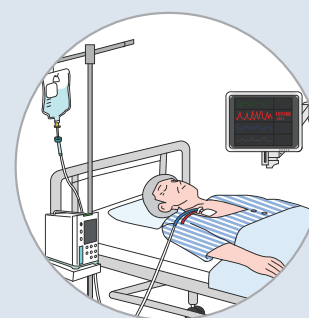
체외생명유지술



수혈



혈압상승제 투여



기타



※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?

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·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

보건복지부

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대표전화 1855-0075)